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시설요건의 조례 이양〉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776호)

■ 정연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37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177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정연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37호)	2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3
1.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시설요건의 조례 이양(안 제70조)	3
※ 참고자료	
1. 관광특구 특례사항	12
2.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13
3. 관광특구 지정현황	14

I.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1776호)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부

나. 제 출 일 : 2024. 7. 16.

다. 회 부 일 : 2024. 7.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도 또는 특례시가 해당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례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Ⅱ. 정연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37)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연욱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17.

다. 회 부 일 : 2024. 7.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관광지 및 지역별로 특색 및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도 또는 특별시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Ⅲ. 검토의견

1.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시설요건의 조례 이양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등 시설요건을 시·도 또는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과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정부제출안	정연욱의원안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① ----- ----- ----- ----- ----- ----- ----- ----- ----- -----	① ----- ----- ----- ----- ----- ----- ----- ----- ----- -----

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성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
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일 것

3.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시·도의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광
안내시설, 공공편의
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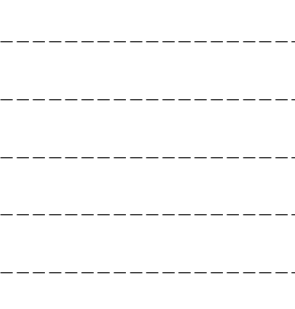
3. · 4. (현행과 같음)

② _____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시·도 조례로-----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handwriting practice, consisting of seven rows of three lines each (top solid, middle dashed, bottom solid).

3. 4. (현행과 같음)

②

“특레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u>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③ (생 략)	----- -----<u>다음</u> -----<u>각 호의 요건</u>----- ----- -----. <u>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u> <u>2. 특레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u> <u>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u> ③ (현행과 같음)	----- -----<u>다음</u> -----<u>각 호</u>----- ----- -----. <u>1. 제1항제1호 ·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u> <u>2. 특레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u> ③ (현행과 같음)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 중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시설(안내, 편의, 숙박 등)을 갖추고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지역을 시·도지사 또는 특레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고,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임.

관광특구로 지정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활동 편의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과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²⁾(참고자료 1)

1)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 ①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2) 「관광진흥법」

제71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2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그런데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중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등 시설요건의 경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³⁾ 지역별 관광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즉, 숙박시설, 휴양·오락시설, 상가시설의 경우 획일적으로 1종류 이상 구비하도록 하거나, 공공편의시설, 관광안내시설, 접객시설의 경우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하도록 구비하여야 한다는 등 구비기준이 모호함.(참고자료 2)

이에 개정안(정부제출안, 정연욱의원안)은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문화·체육·숙박·상가·교통·주차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 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한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등 시설요건을 시·도 또는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관광특구’의 시설요건을 시·도조례에 이양하더라도,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서울특별시 50만명 이상),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 이하라는 요건이 계속 적용됨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수용태세 증진’이라는 ‘관광특구’의 지정 취지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관광특구’는 현재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시장이고, 진흥계획의 수립,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지정취소 등을 모두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관광특구 내 시설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할 경우 관광특구의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⁴⁾

4) 특별시의 경우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르게 하던 것을 제2항에 직접 규정(안 제70조제2항 각 호 신설)하였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제70조의2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안)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분석)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시장이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분석)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분석) ----- ----- ----- 제1항 및 제2항----- -----

다만, 안 제70조제1항제2호의 경우 관광특구를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한 개정안(정부제출안)에 따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정부는 2023. 2. 10.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은 ① 수요자 중심의 ②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③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의 57개 과제를 선정 및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개정안(정부제출안)은 동 계획에 따른 복지·문화분야 과제이기도 함.⁵⁾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 ----- ----- -----.

5) 정부는 동 3대 추진원칙에 따라, 2022. 7월부터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이 과제 발굴에 참여하여,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키로 함.

한편, 2024년 7월말 기준 14개 시·도에 35개소의 ‘관광특구’(참고자료 3)가 지정되어 있는바, 개정안(정부제출안, 정연욱의원안)은 시설요건의 시·도 또는 특별시별 조례 제정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후’로 하고 있음. 즉, 새로 지정하려는 ‘관광특구’의 경우 지정 전에 해당 시·도 또는 특별시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

다만, 현재 지정되어 있는 ‘관광특구’의 경우에도 시·도 또는 특별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설요건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제정 전까지는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요건에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광특구의 시설요건을 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⁶⁾ 및 별표 21(참고자료 2)도 개정될 예정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반영한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개정안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분야	주요 과제
1	국토(12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2	산업(22개)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한,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권한
3	고용(8개)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권한
4	교육(4개)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5	복지(7개)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6	제도(4개)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 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문 의 처

02)6788-5377

참고자료 1

관광특구 특례사항

항 목	내 용 및 근 거
관광진흥개발 기금융자 지원	·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에 한하여 대여 또는 보조 - 관광특구 진흥계획 시행사업(시설개보수, 토지매입), 특구 내 미술관·박물관·공연장·주차시설·숙박시설의 증개축 <관광기금융자지원지침>
공개공지 사용	· 관광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일반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면세업을 경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공지: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차마 통행금지	· 관광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74조제3항>
옥외광고물 완화	·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관광특구)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옥외광고물법 제3조제4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카지노 허가요건	· 제21조(허가 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제21조>
영업제한 미적용	·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관광진흥법 제74조제1항> * 제43조(영업 제한) ① 사·도지사는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의료 광고에 관한 특례	·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6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법」 제69조1항2호나목에 따라 사·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8호>
지구단위 계획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사·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51조>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 2008년부터 정부에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2023년까지 29개 특구에 약 450억원 지원 <관광진흥법 제72조 근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참고자료 2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시행규칙 별표21)

시설구분	시 설 종 류	구 비 기 준
가. 공공편의 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 시설, 상하수도시설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관광안내 시설	관광안내소, 외국인통역안내소, 관광지 표지판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다.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 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숙박시설이 1종류 이상일 것
라. 휴양·오락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 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및 종합 유원시설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1의2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합되는 유원시설이 1종류 이상일 것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 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관광편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바. 상가시설	관광기념품전문판매점, 백화점, 재래 시장, 면세점 등	1개소 이상일 것

참고자료 3

관광특구 지정현황 (2024. 7. 31. 기준)

지역	특구명	지정 지역(소재지)	면적 (km ²)	최초지정일
서울(7)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명동, 회현동, 소공동, 무교동·다동 각 일부지역	0.87	2000.03.30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 일원	0.38	1997.09.29
	동대문 패션타운	중구 광희동·을지로5~7가·신당1동 일원	0.58	2002.05.23
	종로·청계	종로구 종로1가~6가·서린동·관철동·관수동·예지동 일원, 창신동 일부 지역(광화문 빌딩~숭인동 4거리)	0.54	2006.03.30
	잠실	송파구 잠실동·신천동·석촌동·송파동·방이동	2.31	2012.03.15
	강남마이스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0.19	2014.12.18
	홍대 문화예술	마포구 홍대 일대(서교동, 동고동, 합정동, 상수동 일원)	1.13	2021.12.02
부산(2)	해운대	해운대구 우동·중동·송정동·재송동 일원	6.23	1994.08.31
	용두산·자갈치	중구 부평동·광복동·남포동 전지역, 중앙동·동광동·대청동·보수동 일부	1.08	2008.05.14
대구(1)	동성로	성내1·2·3동, 남산1·2동, 대봉1동, 삼덕동 일원	1.16	2024.07.22
인천(1)	월미	중구 신포동·연안동·신흥동·북성동·동인천동 일원	3.00	2001.06.26
대전(1)	유성	유성구 봉명동·구암동·장대동·궁동·어은동·도룡동	5.86	1994.08.31
경기(5)	동두천	동두천시 중앙동·보산동·소요동 일원	0.40	1997.01.18
	평택시 송탄	평택시 서정동·신장1·2동·지산동·송북동 일원	0.49	1997.05.30
	고양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일부 지역	3.94	2015.08.06
	수원 화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일대	1.83	2016.01.15
	통일동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법흥리 일원	3.01	2019.4.30
강원(2)	설악	속초시·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138.10	1994.08.31
	대관령	강릉시·동해시·평창군·횡성군 일원	428.27	1997.01.18
충북(3)	수안보온천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안보리 일원	9.22	1997.01.18
	속리산	보은군 내속리면 새내리·상판리·중판리·갈목리 일원	43.53	1997.01.18
	단양	단양군 단양읍·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	4.45	2005.12.30
충남(2)	아산시온천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일원	3.71	1997.01.18
	보령해수욕장	보령시 신흥동, 응천읍 독산관당리, 남포면 월자리 일원	2.52	1997.01.18
전북(2)	무주 구천동	무주군 설천면·무풍면	7.61	1997.01.18
	정읍 내장산	정읍시 내장지구·용산지구	3.45	1997.01.18
전남(2)	구례	구례군 토지면·아산면·광의면·산동면 일부	78.02	1997.01.18
	목포	북항·유달산·원도심·삼학도·갯바위·평화광장 일원	6.89	2007.09.28
경북(4)	경주시	경주 시내지구·보문지구·불국지구	32.65	1994.08.31
	백암온천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일원	1.74	1997.01.18
	문경	문경시 문경읍·가은읍·마성면·농암면 일원	1.85	2010.01.18
	포항 영일만	영일대해수욕장, 해안도로, 환호공원, 송도해수욕장, 송도송림, 운하관, 포항운하, 죽도시장, 시내 실개천 일대	2.41	2019.8.12
경남(2)	부곡온천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사창리 일원	4.82	1997.01.18
	미륵도	통영시 미수1·2동·봉평동·도남동·산양읍 일원	32.90	1997.01.18
제주(1)	제주도	제주도 전역 (부속도서 제외)	1,809.56	1994.08.31
14개 시·도 35개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